

(주) 한국 무역 정보 통신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8

- * 귀사의 KTNET 가입을 환영합니다.
- * 다음은 가입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 * 문의전화 : 1566-2119
- * FAX번호 : 02-6000-2137/8

1. 고객 사항

- 1) 1번 고객사항은 전부 기입
- 2) 고객사항 밑의 **고유부호** 기입(화물, 통관, 관세환급 서비스 선택시)
 - ① 선사/포워더 : 세관에서 부여한 영문4자리(ex: AAAA)
 - ② 운송사 : 세관에서 부여한 숫자 6자리(ex: 100100)
 - ③ 보세구역 : 세관에서 부여한 보세구역설영특허번호 숫자 8자리(ex: 10010010)
 - ④ 검수회사 : 세관에서 부여한 숫자 9자리(ex :100100100)
 - ⑤ 관세사 & 자가 통관업체 : 세관에서 부여한 숫자 5자리(ex : 10010)

2. 전자무역인프라/EDI서비스

- 1) 사용자 ID와 수발신인식별자는 KTNET에서 부여후 통보
단, **상역외환서비스 가입 고객**은 영문숫자 혼합 6자리에서 12자리 미만으로
수발신인식별자 기입(기입하지 않을시 임의 지정)
- 2) 비밀번호는 영문을 첫자리로 하여 영문과 숫자를 혼합(8자리)으로 작성

3. 통신망서비스

- 1) KTNET 전용선이나 웹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할 고객만 작성
 - ① 전화방식 : 일반전화회선을 사용하여 KTNET 접속
 - ② 전용회선방식 : KTNET과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구축

4.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서류 확인을 상호명 작성

- * 신청일과 신청자란 기입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송부 (2,3,4페이지)
 - 신청자란 기입시 반드시 명판과 직인을 함께 날인

KTNET 전자무역인프라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KTNET(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비스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법", "전자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이용약관의 보고, 신고 및 변경)

① 이 이용약관의 내용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관계법에 의하여 산업자율부장관 또는 경제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율부장관 또는 경제청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② 이용약관 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기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 경우, 회사는 산업자율부장관 또는 경제청장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한 후 이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 때 회사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각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혹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전자무역기반시설 등: 정보통신망 중하위 무역업자와 무역유권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2. 신청자: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이용자: 회사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을 승인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및 이용하는 자에게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를 말한다.
4. 이용자설비: 이용자가 설치한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비 및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사용자: 전자무역기반시설 내에 이용자ID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장소를 말한다.
6. 이용자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시서함에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본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거래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 물품 교역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입/출/인/출/통관/운송/결제/전자인 등 행위 시 필요한 무역문서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전자문서 보관 등
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해 전달 받은 전자무역서비스를 무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상 제 3자 유동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유동/종영한다.
3. 기반시설운영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부가서비스)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자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DB 서비스
회사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유통정보(상품 정보의 흐름)를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통신망 서비스
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 접속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업체의 네트워크를 데이터 전용 회선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3. SK전선망 서비스
회사는 전자무역 구축 관련 보유한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설계/개발/구축 등의 시스템

- ① 회사는 각 사용자 당 하나의 고유번호인 이용자ID를 부여한다.
- ② 이용자에게 토보된 이용자 ID, 비밀번호의 사용 및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사를 변경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때

제17조(서비스제공의 중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국적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국적 및 공적보조 차원에서 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관련에 관한 법률, 전자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설비에 관한 사항을 조종하거나 조종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때
3. 요금납입유예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으로 선정된 때

- ③ 회사는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 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제18조(서비스의 일시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다.
 1. 이용자의 장애 때
 2. 이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을 때
 3. 회사가 정한 정기 점검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중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서비스제공 일시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재개한다.

제19조(약관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계약 전에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계약 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약 체결일의 7일 미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미만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한 서비스가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회사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이용자가 회사의 정기점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 3회 이상 서비스제공 중지를 당한 때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④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의사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정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이용자설비의 설치

제20조(이용자설비의 설치)

- ① 통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타

제7조(서비스 지역)

회사는 국내 전지역 및 해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애처리시간)

기본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에 따른 장애처리 역시 서비스 제공시간 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2장 약정

제9조(서비스의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초청장식의 KTNET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신청의 승인)

- ①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과 설비의 일정, 기술적 의견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② 회사가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 후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제9조의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신청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하였을 때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4. 요금을 채납하고 있는 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5. 설치장소, 설치장비 등이 관련법규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6. 기타 신청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7. 기타 이용신청을 제한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서비스제공 계약)

서비스제공 계약일은 제23조제5항의 가입일에서 발급일로 정한다.

제14조(시험서비스)

- ① 회사는 완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서비스 기간을 설정하여 TEST ID를 통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사서함 관리)

- ①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 사서함에 보관된 문서를 송·수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용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발도 보관 관리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 전자문서의 종류, 송수신시간 등 전자문서의 이용성태에 관하여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이외에는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자 ID 등)

- ①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치장소는 이용자의 사업장 등 기술상,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21조(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

- ①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설비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서비스문항 중 회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이용자 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상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요구로 회사가 장애보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이용자설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치의 경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검사 3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유지보수)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항상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한다.

제23조(설비검사 등)

- ① 이용자는 설비가 완공되면 이용자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설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치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고장신고)

이용자가 이용자설비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는 점검을 후 회사에 대하여 고장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25조(양도 등의 금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권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증여증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이용자는 회사의 시간외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설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이용자의 지위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한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들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3. 별의 법인이 하위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4.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6.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이용자가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단일하다고 인정될 때만 이윤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한다.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7조(회사의 의무)

④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회장과 선정한 서비스제공 대상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회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장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⑥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즉시 이용 수리 또는 복구한다.

⑦ 회사는 전자무엇기변시절 문명규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제28조(이행자의 의무)

① 이윤은 저비스 이윤에 대한 대가로서 비 이윤액에서 정한 요건 종류 요건납입액자의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

② 이윤은 저비스 이윤액에서 정한 요건 금액에 저비스이윤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기초 등 세금에 대한 경우 별도로 이를 부과하여 한다.

③ 이윤은 저비스 이윤액의 귀속자로서 인하여 권자요기변신세를 부과하였거나 정제를 조세환급 하였을 경우 원본의 조세, 원서 또는 기타 조세에 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윤은 저비스 이윤액의 세 개계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윤은 저비스이윤액과 별도로 저비스이윤액에 관계하여 조세환급 조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제5장 요금

제29조(서비스 이용요금)

③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 단위로 부과한다.

④ 전자무역서비스이용료 조는 전자무역서비스이용료(이하 “관세료”)중 운송료는 운송차, 운송료는 운송차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들에는 그 약정을 적용한다. 또한 운송료와 계약요구 미충전 경우에는 전자무역서비스 이용료 부과할 수 있다.

⑤ 전자무역서비스(서비스)기본료는 선박/화물/물류/경매 등 무역절차 전 과정에 있어 VAN EDI 방식이나 인터넷 기반의 XML 방식으로 전자무역거래시스템 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수출입통행에 대하여 건당 부과한다.

⑥ 관세료 산정은 서비스별 단가제 관세율(또는 등)에 곱하여 산정하며, 서비스별 사용량(또는 건수)에 따른 구간별 일련 및 특률 추가할인, 상여시간별(또는 등) 적용할 수 있다.

⑦ 제2장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행차액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및 처리를 사전에 회자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⑧ 개설업체는 서비스개시일로부터 부과한다. 단, 개설 수 해제를 하더라도 개설자는 변통되지 않으며, 개설세를 올 경우에는 개설에 따른 조세의 징수에 수 해제 후에도 계속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요금납입방법)

이용자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에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에 의한 방법
2. 은행 자동이체로 인한 방법
3.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4. 전자납부에 의한 방법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④ 세금과세자는 월별 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익월에 납세한다.

⑤ 회사는 서비스 마당요금의 요금고지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한다.

⑥ 이용자가 납입명령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변경통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한다.

제3조(요금납입책임자)

⑤ 이윤자의 대표자 1인을 요근납입책임자로 한다. 다만, 회사가 인접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자를 요근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다.

⑥ 요근납입책임자는 이 이윤액권에 따른 모든 요근 들을 이윤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가산금의 부과)

① 요근의 납입의무자가 해 27일까지 요근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당된 요근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근의 납입기일에 만료되는 날의 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된 요근에 가산하여 징구한다.

제33조(요금의 반환)

③ 회사는 이용자의 과소 납입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과납에 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의한 요구반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 등의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4조(손해배상)

③ 회사는 회사의 귀속자산으로 인하여 이익자가 계속 6년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자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확인된 날 회사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손해 이익이 가해진 전 날까지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해근 3개월간의 1월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본격해결) 이 약관으로부터, 이 약관의 관할하여 또는 이 약관의 불이행으로 당사자간에 발생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재판관할을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시정서계구 및 대법원의 관할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헌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7장 기타

제36조(면책조항)

③ 회사는 전제책임, 정부조치 또는 이해 중회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 지연 혹은 중단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오류 및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정보통신망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작업 등의 사유로 고지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타사 서비스 등의 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2조(경과조치)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KTNET 전자무역인프라 이용약관(www.ktnet.co.kr)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부서,성명,직위,전화번호,팩스번호,핸드폰,이메일,고객구분,고유번호,사용자ID - 비밀번호,수발신식별자,업무구분,고객번호,신용카드번호,은행계좌번호	-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확인,개인식별,불량회원의 부정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가입의사확인,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불만처리,고지사항 전달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특정 맞춤형서비스 제공, 청구서 등 발송, 본인인증, 요금결제 및 요금추심 - 신규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탈퇴시 까지

동위원소 ☐ 동위원소 안함 ☐

<위탁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주)스텝포유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객상담
쓰리에이빌링(주)	청구서 등 발송, 고지사항 전달
(주)서울신용평가정보	서비스요금 추심

상호 : 동의함 ☐ 동의 안함 ☐

KTNET 전자무역인프라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표시란은 KTNET 기재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전화및팩스번호 (Tel.1566-2119,FAX.02-6000-2137/8)

접 수 일 :

고 객 번 호 :

1. 고객사항

* 고객사항은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상 호 : (국문) (영문)	요 금 고 지 처	-			
	대 표 자 :		주 소 :	부 서 :	성 명 :	직 위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	FAX :	핸드폰 :	이메일 :
고객 구분	무역업체 ☐ 관세사 ☐ 포워더 ☐ 선사 ☐ 항공사 ☐ 은행 ☐ 조합 ☐ 보세창고 ☐ 보세운송사 ☐ 기타 ()					
고유 부호	(관세사는 관세사부호, 화물관련업체는 세관등록 부호를 기재함.)					

2. 전자무역인프라/EDI 서비스

사 용 자 ID		비 밀 번 호		수 발 신인식별자	
				(1)	
		첫글자는 영문으로 시작, 8자리		(2)	
업무 구분	상역/외환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화물 ☐			(3)	
	조합추천 ☐ 보험 ☐ 관세수납 ☐ CO/CI ☐ 검사검역 ☐			(4)	
	요건확인 ☐ 전자민원 ☐ 기타 ()			6자리 이상 12자리 미만	
이용 실무자	-			부 서 :	
	주 소 :			성 명 :	
	전화 :			직 위 :	
팩스 :			이메일 :		
핸드폰 :			가입 유치 업체 명		

신청 사항	서비스유형	EDI ☐ XML ☐
	프로토콜	ebXML 동기식 ☐ ebXML 비동기식 ☐ FTP ☐ Socket X25 ☐ Dialup ☐ 기타 ()
	CPA_ID	KTNET_XXXXXXX
	보안 유형	1. 전자서명 사용 ☐ 미사용 ☐ 2. SSL 사용 ☐ 미사용 ☐
	전송 주소	예) http://127.0.0.1:8080/servlet/EbEnabler (ebXML 비동기식일경우 꼭 기재)

3. 통신망(전용회선) 서비스

신청 사항	회선 구분	1. 전용회선(TCP/IP 방식) ☐ 회선속도 () bps 2. UTM(VPN) ☐ 3. 기타 ☐	
	설치장소	시(도)	구(군/시) 동(읍/면)
	개통 일자	서비스 개통 희망일 (20 년 월 일)	
	장비 임대	1. DSU 자체보유 ☐ 임대 ☐ 구매 ☐ 2. Router 자체보유 ☐ 임대 ☐ 구매 ☐ 3. UTM 장비 임대 ☐	
접속희망 PC 수		현재 : 대, 1년후 : 대	유치협력업체명
통신 담당자 (고객)		부 서 :	성 명 : 직 위 : 전 화 : (핸드폰) :

KTNET 전자무역인프라 이용약관(www.ktnet.co.kr)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株)韓國貿易情報通信 貴中 (명판 및 직인날인)

접 수	담당자	확인자

등 록	담당자	확인자